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OO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~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신상 변동신고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<u>참전유공자의 국내 주소에 대하</u> <u>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</u> <u>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</u> <u>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</u> <u>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</u> <u>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